

2021학년도 고양동산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2013.03.18.	제정	2014.03.28.	1차 개정
2014.06.12.	2차 개정	2014.11.26.	3차 개정
2015.04.29.	4차 개정	2015.08.25.	5차 개정
2016.03.21.	6차 개정	2017.03.07.	7차 개정
2018.03.08.	8차 개정	2019.03.18.	9차 개정
2020.03.27.	10차 개정	2021.03.10.	11차 개정
2021.08.31.	12차 개정		

I. 목적

본 규정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을 준거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경기도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기본 방침

1. 학교는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따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시행한다.
2. 참된 학력¹⁾을 기르기 위해 모든 학생의 전면적 발달을 돕는 성장중심평가를 실시한다.
3. 성장중심평가는 논술형 평가를 포함한 다양한 수행평가로 실시하며 정의적 능력 평가와 협력적 문제해결력²⁾ 평가를 강화한다.
4. 일제식 정기고사 전면 폐지에 따라 수업과 평가를 연계한 교사별 평가³⁾를 실시한다.
5. 학년 초 학생의 발달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일회성 진단평가가 아닌 진단활동 주간을 운영한다.
6.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하여 관리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 전출 시 전송방법은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수행평가를 최소화한다. 단, 수행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각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생의 성취수준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등을 파악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실있게 기재한다.

1) 참된 학력은 단순한 지적 능력인 지식과 기능뿐만 아니라 고등정신능력인 분석력, 비판력, 판단력, 종합력과 정의적 능력인 호기심, 성취욕구, 도전의식, 책임, 태도 등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2) 협력적 문제해결력(PISA 2015)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동료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3) 교사별 평가는 교사의 평가권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수업의 과정 중에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1. 설치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 기록부의 작성과 관리 및 기타 학교 학업성적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둔다.

2. 구성 및 역할

가.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나.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다. 교원 위원은 교무부장, 연구부장, 평가담당자, 나이스 담당자, 특수학급 교사, 각 학년 평가담당교사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업성적 관리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라.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매년 3월부터 차년도 2월까지로 한다.

마.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되, 인증위원회, 학력향상관리위원회,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위는 각각 학교장과 교감으로 한다.

3. 심의 내용

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 전출 시 전송방법

- 평가 결과 통지 방법

-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

나. 학년(학급) 평가 계획

-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학생의 학업성적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운영 방법

가.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실시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나. 회의 내용은 기록·보관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학생 평가 및 관리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 학년협의회를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다.

라.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대한 교원 연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모든 교원이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한다.

IV. 학생 평가 및 관리

1. 평가 방향

- 가. 모든 학생이 교육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학생의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여 학습결손 예방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나.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며, 교수·학습활동과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다. 다양한 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평가를 지향한다.
- 라.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과 상황을 평가과제로 제시하여 학생이 자기 삶의 주체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갈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 마.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협력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중시한다.
- 바. 학생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생이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 및 관리

가. 평가 계획 수립

- 1) 평가 계획은 학년협의회에서 수립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또한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계획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2) 학년협의회에서는 평가 계획에 반영할 성취기준 설정 등 공동으로 반영할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년 평가 계획을 작성한다.
- 3) 평가 계획에는 각 교과별 평가의 성취기준 및 영역,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을 포함한다.
- 4)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나. 평가 운영

- 1) 학생의 성장과 발달 정도에 중점을 두고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수행과정과 결과를 평가한다.
- 2) 평가는 수업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과제형 평가를 지양한다.
- 3) 복수의 학생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모둠활동 등을 평가할 때는 개인별 평가와 집단별 평가를 균형 있게 실시한다.
- 4) 평가 결과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면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하고,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재도전의 기회(지필평가 2회, 실기평가 3회)를 준다.
- 5) 평가 계획에 포함된 성취기준은 평가 도구(평가과제와 채점기준표 등)를 작성하여 사후에 결재를 득하며, 결재는 학년부장-연구부장 전결로 한다.

다. 평가 결과 처리

- 1) 평가 결과는 평가 계획에 따른 학생의 성취 수준과 평가 장면에서 관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 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학생 본인에게만 공개하여야 하며, 타인

- 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3) 평가 산출물과 성장중심 가정통지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평가지 형태의 평가 산출물은 평가 결과를 첨삭하여 가정으로 수시로 통지하고 5일 이내(휴무일 제외)로 회수한다. 가정에 발송하기 어려운 평가산출물(포트폴리오, 연구보고서 등)은 학부모 상담 등을 활용하여 학부모에게 통지한다.
 - 4)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근거자료(학생들의 평가 결과 산출에 사용된 교사의 기록 자료 등)는 학년 진급이 완료된 이후까지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진급 완료 이후 차년도 3월 1일 이후에 폐기한다.
 - 5) 교과학습발달상황은 1, 2학기를 모두 입력하며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수시간, 이수 내용)과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1등급 내용은 관련 교과에 입력하지 않는다.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및 관리

- 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학년)에서 정한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시간을 입력하지 않으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2개 영역의 특기사항(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입력하되,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기록한다.
- 다.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 실적'란에 입력한다.
- 라. 안전한 생활(초등학교 1~2학년)은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근거로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 마. 영역별 누가기록은 학생의 구체적 활동 내용(활동실적, 태도 및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관찰하여 수시로 작성한다.
- 바. 평가 결과는 평소 활동 상황을 누가 기록한 자료를 토대로 학생의 활동 실적, 진보의 정도, 행동의 변화, 특기사항 등을 담임 또는 담당 교사가 수시로 기록한다.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

- 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 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학기 구분 없이 입력한다.
-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작성에 근거가 되는 누가기록은 NEIS 누가기록 메뉴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일지(교무수첩, 상담일지 등)에 작성된 기록도 인정한다.
- 라. 학생의 장점과 단점은 누가 기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입력하되, 단점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변화 가능성을 함께 입력한다.
- 마.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 1)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일자(내부결재일)와 함께 결정 즉시 입력한다.
 - 2)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한다.
 - 3)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받은 학생이 이후 긍정적인 변화 모습을 보인 경우, 변화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V. 기타 사항

1. 결시생의 학업성적 평가 및 처리

- 가. 평가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은 출석 후 일주일 내에 개별적으로 재평가 기회를 제공한다.
- 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출석 인정 결석 학생도 위 조항에 따른다.
- 다. 학습과 평가 활동에 오랫동안 참여(5일 초과)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예:장기 무단결석 등)에는 임의입력 선택 후 '○○○ 사유로 장기 결석하여 미 실시'와 같이 기록한다.

2. 전출생의 학업성적 평가 및 처리

- 가. 전출 학생의 경우 전출 이전의 모든 평가결과는 전산 입력하여 전입학교로 보낸다.
- 나.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은 학년에서 실시한 영역별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하여 전송한다.
- 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은 NEIS 누가기록 메뉴에 작성하여 전송한다.

3. 전입생의 학업성적 평가 및 처리

- 가. 전입생의 경우 원적교의 성적과 전입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종합하여 진술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전입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을 문장으로 기술한다.
- 나. 전입생의 수행평가 결과 NEIS 입력은 원적교 평가내용 중 유사한 내용이 있을 경우 반영하고,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평가 기회 제공 또는 대체 과제를 부여하여 성적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기 종료일까지 30일 이하로 남은 시점에 전입을 온 학생의 경우 시간상 재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임의입력-전입으로 인한 미 실시'로 입력한다.

4. 면제.유예 학생의 경우 재취학·편입학을 위하여 그 이전의 평가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한다.

5.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및 북한 이탈주민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한 후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6.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 조정 방안

-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통합교육을 받는 교과에 한하여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내용·수준·방법 및 성적 처리는 아래 사항에 준한다.
 - 1) 특수학급에서는 개별화 교육과정에 따른 해당 학생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을 종합하여 문장으로 진술한 후 담임에게 제공한다.
 - 2) **개별화 교육계획에 의해 특수학급에서 학습이 이루어진 교과의 경우**의 경우 개별화 교육과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 수행평가 결과의 NEIS 입력은 '임의입력-별도 평가계획에 의하여 평가함'이라고 명시한 후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다.
 - 3) ~~학습과 평가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는 특수 아동의 경우 '임의입력-개별화 교~~

~~육과정에 의하여 평가'라고 명시한 후에 평가 결과를 입력한다.(삭제)~~

- 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평가장 설치·운영, 대독, 대필, 보조(공학)기기, 보조인력 지원 등 적절한 평가조정을 개별화지원팀에서 정하여 지원한다.
- 다.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 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시험 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 학생에게는 확대 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을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라.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마. 청각장애학생 중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 바.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
- 사. 건강장애학생
 - 1) 행동발달에 대한 평가는 위탁교육기관(화상교육)의 평가 내용을 받아 담임교사가 생활기록부에 전산 입력한다.
 - 2) 평가 당일 출석하여 평가를 보는 경우 평가 결과를 그대로 입력하며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질병결석으로 인한 미응시로 처리한다.

7.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운영

(관련근거 :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경기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

가. 학생선수 학사관리

- 1) 학생선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 10일
- 2) 학생선수 출결처리 방법
 - 출결처리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범위 내에서 학교장 허가
 - 지각·조퇴·결과 처리: 대회 및 훈련 참가를 위한 지각·조퇴·결과 사용 3회 누적 시 출석인정결석 1일로 간주한다.
 - 출석인정결석 적용 예외 : 학생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로서 국가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를 희망하거나,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에 참가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 초과 가능하다.
 - 학교장은 관련 공문*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수의 초과 허용 가능하다.

* '국가대표 선발로 인한 대회 및 훈련참가 요청' 공문(대한체육회),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예선) 참가 안내' 공문(시도교육청 및 체육회)

- 국가대표로서 장기간 국내에서 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훈련장소 인근학교에 위탁(교환)교육을 통해 이수한 수업도 인정국가를 대표한 대회·훈련 참가, 전국(동계, 소년)체육대회(지역예선 포함) 참가 시 허용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 적용(관련근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1)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에 미도달 한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의무)하고 경기대회 출전 제한한다.

- 적용교과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5과목)
- 최저학력 기준 : 50%, 학생선수 소속 학교의 해당학년 해당교과별 평균성과와 비교
- 초등학교에서 지필고사 미 실시 하는 경우, 담임교사가 진단 및 단원 평가 결과 등의 자료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심의 후 최저학력 도달여부 결정한다.

2) 최저학력제 미달 학생선수 제재 방안

- 대상: 최저학력기준 미 도달 학생선수
- 운영: 다음 학기 전국단위 대회에 출전 금지 단, 학교 급별로 구분하여 운영함. 예) 초(중) 6(3)학년 2학기 → 중(고)학교 1학년 1학기로 적용하지 않는다.
- 아래의 대회인 경우에는 출전을 허가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대회 예선전을 거쳐 시도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국가대표 선발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 올림픽, 월드컵,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대한체육회장이 인정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대회에 한함)는 참가 가능<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 단체에 선수등록은 가능※ 학생선수 개인적 희망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제외함 |
|--|

8.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관리

가.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및 관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처리 및 관리 지침’에 의하여 시행하며 전 학년 모두 전산처리한다.

나. 학부모 서비스 반영은 종업식 당일 처리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은 1학기과 2학기 각각 모두 입력한다.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은 1학기과 2학기 종합하여 4개 영역을 모두 입력한다.

라. 학기말 생활통지표에는 각각 다음의 항목이 제시된다. 1학기에는 [출결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교과평가], [가정통신문]를 선택하고, 2학기에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을 추가하여 출력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2013. 2. 1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9호(2014.1.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27호(2015.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27호(2015.1.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과 경기도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2016.03.01.)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195호(2016.12.2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43호(2018.1.3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80호(2019.1.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321호(2020.1.6.)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365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